

2021년 11월 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방송·인터넷·통신은 11월 1일 11시부터 보도)

친환경농업과 과장 강혜영(044-201-2431), 사무관 백창현(2437), 사무관 정세희(2439) / 제공일: 11월 1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

-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가와 일반농가 모두에게 자재비용 지원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개정('21.11.2. 시행)

- 친환경농어업법 개정('21.4.13. 개정)으로 농어업인에게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 지원 가능

◆ 법령 개정에 따라, '22년 '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' 개편

- 지원 대상을 친환경농가에서 일반농가까지 확대하고,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컨설팅 지원으로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

※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주요 개편내용

- ① 지원 대상 확대: 친환경농가 → 친환경농가 + 일반농가
- ② 사업 신청 시, 친환경 및 일반농가의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
- ③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 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

* 토양검정 : 토양의 pH, 유기물, 인산, 칼륨 등 성분 함량 분석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농어업인에게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친환경농어업법)」 ('21.4.13. 개정)과 시행령('21.11.2. 공포)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
- 농어가의 환경 친화형 자재 사용을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「친환경농어업법」(21.4.13. 개정)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'유기농업자재* 지원 사업' 대상을 '22년부터 일반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,
 - 이를 위해 '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을 '21년 31억 원 (국비 기준)에서 6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 반영하였다.
 - * (유기농업자재)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자재
 - 토양개량·작물생육·병해충 방제용으로 '21.10월 기준 1,903개의 제품이 공시되어 있으며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(업무소개>유기농업자재)에서 확인 가능
 - 농식품부는 '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.
 - 지금까지의 동 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으며,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.
- '22년도 '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'에서 달라지는 것은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 외에 동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, 일반농가도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.
 - 이러한 조치들은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, 이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.
- 동 사업 신청은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, 최종 사업대상자는 '22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.
 -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'농림사업정보시스템(uni.agrix.go.kr)'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참고

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개요

- 목적 :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가에 유기농업자재* 지원
 - 법률 개정(개정 '21.4.13.)으로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확대
 - * 유기농·수산물을 생산·가공·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재료로 만든 제품('21.9월 기준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1,903개 제품)
- 근거 법률 : 「친환경농어업법」 제16조제1항, 제13조제3항

제16조(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·유통·수출 지원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, 생산자단체, ~ 지원할 수 있다.

1.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,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
2.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

제13조(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)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지원조건 : 국비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50%

-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

구분	'21	'22 정부안
합 계	15,525	33,432
국 고	3,105	6,896
지방비	4,657.5	9,951
자부담	7,762.5	16,585

-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자재 원료* 및 유기농업자재(총 구입비용/ha) : 유기인증 200만원, 무농약인증 150만원 * 91종: 토양개량·작물생육 42종, 병해충관리 49종
- 녹비작물 종자(kg/ha) 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 50kg

<'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(안)>

- ▶ 주요개정 :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 확대, 비료사용 처방서 제출 의무화, 토양검정·컨설팅 지원 신규 도입 등
- ▶ 추진일정 : 의견수렴 및 지자체 등 회의(~10.22) → 지침 확정(~10월말) → '22년 사업신청 접수(11~12월) → '22년 사업대상자 확정 및 시행('22.1월~)